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노 무 현 인

2007년10월 4 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  
재정경제부 권 오 규  
장 관

◎대통령령 제20313호

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연 100분의 66을”을 각각 “연 100분의 49를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각호의 1을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를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연 100분의 66을”을 “연 100분의 49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3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.

◇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고,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노 무 현 인

2007년10월 4 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  
국방부장관 김 장 수

◎대통령령 제20314호

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4(공중충돌예방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항공기) 법 제2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